

석좌교수임용등에관한규정

2019.06.27. 제정 2019.12.09. 일부개정 2021.04.23. 일부개정 2022.05.27 일부개정
2024.10.01. 일부개정 2024.11.02. 일부개정

<교무팀>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조제5항의 석좌교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석좌교수”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 및 사회활동 등으로 명성이 있는 자를 교육·연구에 종사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결격사유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.

제2장 임 용

제4조(임용일)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5조(임용기간) ①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부 및 대학원의 정규수업을 위해 임용된 석좌교수는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,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. (개정 2019.12.9., 2022.5.27. 2024.10.1., 2024.11.2.)

② 삭제 <2019.12.9.>

③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재임용 통지가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.

제6조(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) ① 부서에는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는 부서장이 임명하는 2인 이상의 관련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7조(신규채용)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.

② 공개채용은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부 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.

③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관련 석학을 초빙하는 경우 교무위원 3명 이상의 추천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④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
제8조(임용) ① 임용기간, 강의시간, 임금, 면직사유, 복무 등의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하여 임용한다.

② 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
제3장 복무 및 처우

제9조(강의시간 등) 석좌교수는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의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.

제10조(복무 및 처우) 석좌교수의 복무 및 처우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재원) ① 석좌교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기업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한 기부금, 기탁금,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재원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삭제 <2021.4.23.>

제12조(임금) ① 임금은 담당 업무(강의, 연구업무, 기타 지정업무 등)를 준비·시행하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.

② 계절학기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로 정한다.

③ 기타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임용보고) 석좌교수를 임용한 경우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퇴직 및 면직

제14조(당연퇴직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.

제15조(면직사유 등) 계약기간 중이라도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거나 계약서에 정한 면직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.

제5장 보 칙

제1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하는 석좌교수부터 적용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석좌교수임용규정」은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석좌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임용기간, 보수, 임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석좌교수임용규정」과 임용계약 내용을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임용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임용시 계약기간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임용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임용 시 계약기간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